

### [서식 예] 횡령죄

# 고 소 장

고소인 ㅇㅇㅇ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전화번호 : 010-0000-0000)

피고소인 △ △ (주민등록번호 111111-1111111) ○○시 ○구 ○길 ○○ (전화번호: 010-0000-0000)

### 고소취지

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횡령죄로 고소를 제기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얶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고 소 사 실

피고소인은 20○○. ○. ○. ○○:○○경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에 있는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으로부터 "발행일 20○○. ○. ○. 지급기일 같은 해 ○. ○, 액면금 1,000만원"의 약속어음 1장에 대한 할인의뢰를 받아 고소인을 위하여 보관중, 20○○. ○. ○.경 고소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어음을 고소외 □□□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명목으로 동인에게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기에 본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.



## 입 증 방 법

추후 조사시에 제출하겠습니다.

20 이 이 년 이 일 이 일

위 고소인 ○ ○ ○ (인)

○ ○ 경 찰 서 장(또는 ○ ○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) 귀 중



제출기관	범죄지, 피의자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	공소시효	7년(☞공소시효일람표)
고소권자	피해자(형사소송법 제223조) (※ 아래(1)참조)	소추요건	<ul><li>※ 아래(2) 참조</li><li>(형법 제361조, 제328조)</li></ul>
제출부수	고소장 1부	관련법규	형법 제355조1항
범죄성립	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		
요 건	거부한 때		
형 량	· 5년 이하의 징역 · 1,500만원 이하의 벌금		
	(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음 : 형법 358조)		
불기소처분 등에 대 한 불복절차 및 기 간	(항고)		
	·근거 : 검찰청법 제10조		
	・기간 :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(검찰청법 제10조4항)		
	기선·시민일까의 8세일 본단 일부터 50일(점일·8 및 세10도4·8)   (재정신청)		
	·근거 : 형사소송법 제260조		
	·기간 :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		
	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(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)		
	(헌법소원)		
	•근거: 헌법재판소법 제68조		
	・기간 :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, 그 사유가 있		
	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의		
	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		
	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(헌법재판소법 제69조)		

#### ※ (1) 고소권자

(형사소송법 제225조)

- 1.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
- 2.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, 자매. 단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

#### (형사소송법 제224조)

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[단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"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(고소의제한)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."고 규정함]

- ※ (2)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(형법 제361조, 제328조)
  - 1. 직계혈족 ,배우자, 동거친족,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형을 면제
  - 2.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

3. 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